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8일, 박정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
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4.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의원)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1. 사회적기업 협회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간 협력·조정을 위한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6조의3), 협회가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 보호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의4)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3(협회 설립 등)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2.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시행 3.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에 관한 사업 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

<신 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⑤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
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
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
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u>2. 공제계약의 내용</u> <u>3. 공제금</u> <u>4. 공제료</u> <u>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u> <u>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사회적기업은 2007년 법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3,700여 개사로, 고용 창출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왔음.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업 간 협력 기반이 미약하고, 동일 업종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비효율, 공공정책에 대한 집단적 의견수렴 채널 부재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사업 지속가능성 문제를 완화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동 법안의 심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개정안은 협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과 법인격 취득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안 제16조의3제4항에서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민법 제33조 및 제40조¹⁾가 준용되기 때문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아도 협회의 설립에는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관은 법정단체 설립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규범으로서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정관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가 정해짐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규정한 이후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관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거나, 주요 사항만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정관의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용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입법례

「관광진흥법」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으로, 개정안은 협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동 협회가 자율적인 민간기구로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겠으나,

공제사업은 그 성격상 단순한 내부 사업이 아닌 금융 및 보험과 유사한 공익적 사업이므로 자금 운용과 법적 안정성, 회원 보호 측면에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7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8조(지도·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제와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발생에 따른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적 설립근거, 운영 목적, 기초재산, 계약 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적용 법규의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

[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비교

구분		보험회사	공제조합
법적 설립근거		상법, 보험업법	민법, 개별법
운영 조직	운영 목적	영리 추구	상호 협조를 통한 리스크 관리
	소유	주주	회원(조합원)
	기초재산	자본금	출자금

상 품	최고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조합원 총회
	사업	보험, 부수업무	경제사업, 신용사업, 보험사업, 상호부조 등
	보험계약 대상	일반 보험소비자	조합원
	관할 정부 부처	금융감독원	소관부처
상 품	보험요율	모집수수료가 있어 상대적으로 높음	모집수수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낮음
	약관	상대적으로 복잡함	다소 간소함
	적용법규	· 보험업법 · 보험업감독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각종 회계기준(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 재무건전성규제 · 전자금융거래법 · 공정거래법 · 각종 금융행정지도	개별 근거법

자료: 최창희, 홍민지, “공제보험 현황 조사”, 보험연구원, 2020.4.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은 각 소관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의 적용은 배제²⁾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특수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 보험사처럼 상업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에 복잡한 보험업법 규제를 배제하고 간소화된 절차(주무부처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회의 원활한 공제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

2) 보험업은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므로, 최소 자본금 요건(업종별로 200~500억원), 재무건전성 요건, 3년 이상의 중장기 사업계획서 제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대주주의 적격성 등의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산운용·보험상품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됨.

3) 참고로, 최근 「보험업법」 제193조(2020. 12. 8. 개정)에서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보고 주기를 현행 연 2회(4월 말, 10월 말)에서 연 1회(4월 말)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	제17조(보고 등) ① ----- ----- -----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9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공제업자나 주무장관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

「보험업법」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말까지-----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7조4)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연 2회(4월 말, 10월 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사회적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과 10월 말까지(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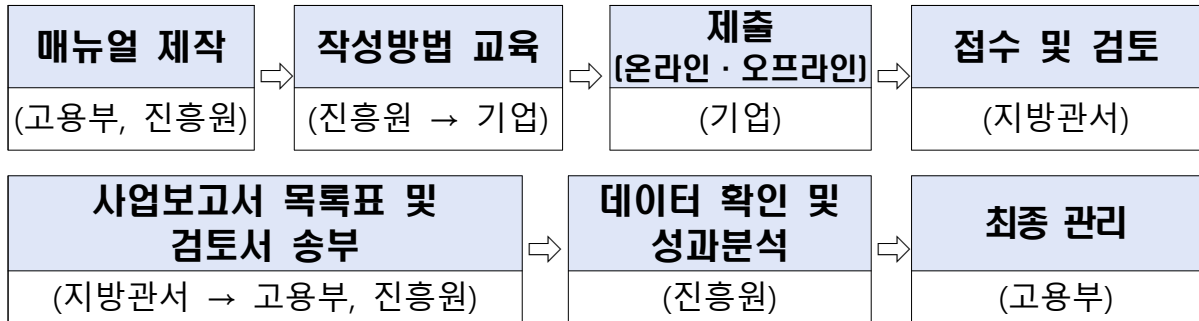
-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기업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유형, 조직형태, 업종 등 기업 기본정보와 사회적 목적 재투자 내용,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내용 등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수입·지출 등 회계에 대한 사항 등이 기재되며⁵⁾,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보고서의 평가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⁶⁾.

-
-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유급근로자 명부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근로자 수·매출액 등의 사업 자료가 1년 단위로 집계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연 2회 제출 실익이 크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을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보고 주기를 완화하여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⁷⁾, 사회적 협동조합도 연 1회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⁸⁾ 등을 고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8)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음.

다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제출주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에는 연 1회로 규정되었으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경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⁹⁾에 따라 2012년 일부개정을 통해 연 2회로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개정 당시의 취지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현시점에서의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편, 2024년 7월 정부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¹⁰⁾한 바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사회적기업 대상 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합동점검¹¹⁾과 통합정보시스템 개편¹²⁾, 자율경영공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관련 통계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4월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관리되므로, 10월 보고서 제출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임.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482,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2011.10.17.) 검토보고서 1~2면, 9면 참조.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5, 2024. 7. 24 정부 제출)

11) '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합동점검을 '15년 하반기부터 강화(기존 재정지원 위주 점검 → 재정지원+인증(사회적기업)·지정(예비사회적기업) 요건 등 점검 포함)

12) '23년 통합정보시스템 개편(기재부·한국재정정보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정부지원 및 근로자 고용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을 통해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